2019년도 구내식당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19. 7. 24. 기획조정실 운영지원부>

1 실시목적

○ 공단에서 위탁운영중인 구내식당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단과 협력사가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력사 근로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공단과 체결한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위탁운영 계약 특수조건 포함)에 공단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사가 자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2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 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2017.7.1.)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제2항(위험성평가)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 본 지침은 공단이 위탁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원(고용개발원 포함) 구내식당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등의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함

○ 구내식당별 위험요인은 사업장 실정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음

4 조직구성

○ 협력사: 안전관리책임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 공 단: 직업지원처장(직업능력개발원) 또는 운영관리팀장(고용개발원)

※ 위험성평가 조직: [별첨1] 양식에 따라 협력사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구성

5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총괄안전관리 책임자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노력(회의장소 제공, 회의 참석(주관) 등)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및 인지 ○ 위험성평가 교육 - 총괄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 작업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외부교육기관 교육기회 제공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안전보건 설비개선비용 또는 개인보호구 구입 등 예산편성 및 집행 - 재해사례 수립·전파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안전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절차와 내용 숙지
안전관리감독자 (공단)	**위험성평가 실시 참여 및 감독**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에 대한 제언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제언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제언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숙지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인지 ○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안전관리감독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 안내 및 관련회의 개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 ○ 위험성평가 연간계획 수립 및 실시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종사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6 실시시기

○ 최초평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구내식당 전반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①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가 발생한 때

②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③ 기타(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실시방법

○ 실시방법: 사업장 자체 실정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에 따라 실시

① 협력사 안전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관리해야 함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함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해야 함

④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함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함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⑦ 협력사 사업주는 구내식당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전 공단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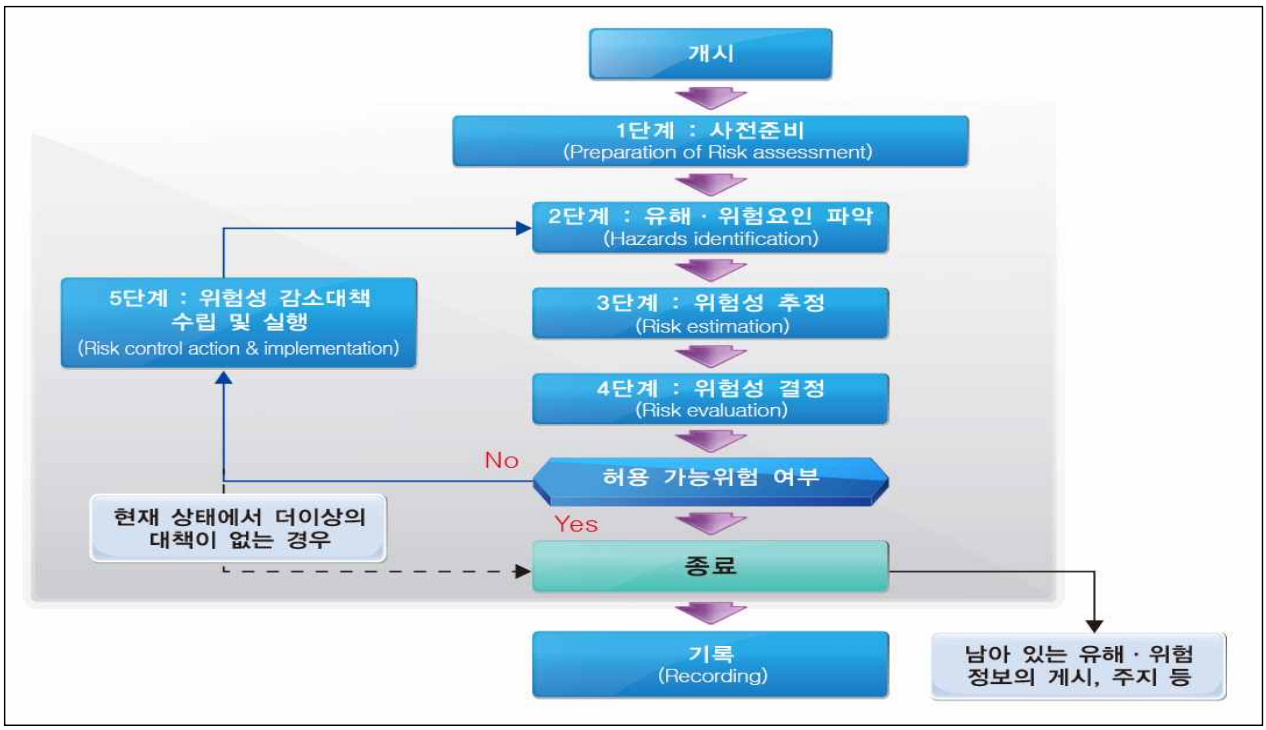
8 추진절차

○ 위험성평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시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추정 ⇒ 【4단계】 위험성 결정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위 순서를 반복

<위험성평가 절차도>



① 1단계: 사전준비[평가대상 공정(작업) 선정]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②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위험성 추정

☞ 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표1>과 중대성<표2>을 조합 또는 곱하여 산출

<표1> 가능성(빈도) 예시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중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하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표2> 중대성(강도) 예시

구 분	중대성	기 준
대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소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표3> 위험성 추정 예시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대 (3)	중 (2)	소 (1)
상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중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하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④ 4단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 결정

<표4> 위험성 결정 예시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를 제공 및 교육
3~4	보통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6~9	높음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

⑤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는 절차

⑥ 6단계: 기록

☞ 위험성평가 결과표 등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

9 실시공지

○ 협력사 안전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추진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여 회의 또는 안전보건행사 등에서 구성원에게 홍보·주지시키고, 조직 구성원에게 공지하여야 함

⑩ 유의사항

○ 위험성평가 대상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위험시설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위험성 평가결과,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계획을 안전보건 활동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모니터링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 강구

○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공지

⑪ 기록관리

○ 협력사 안전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아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함

①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②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③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④ 위험성 추정 및 결정

⑤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계획(일정)

⑥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위험성평가 기록은 3년 이상 보관. 다만,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 협력사 사업주는 공단 구내식당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 협력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결과에 대한 공단의 안전관리감독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⑫ 참고자료

○ 위험성평가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서식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http://kras.kosha.or.kr) 참조

⑬ 추진일정

○ 협력사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준비: '19. 7. 24. ~ 7. 31.

○ 협력사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기간: '19. 8. 1. ~ 9. 15.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회의: '19. 9. 15. ~ '19. 9. 20.

- 협력사 ⇔ 공단(직업능력개발원 또는 고용개발원)

○ 협력사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19. 9. 25.

- 협력사 ⇒ 공단(직업능력개발원 또는 고용개발원)

※ 결과보고서는 문서로 제출하되 아래한글 또는 PDF 전자 파일(5MB 내)별도 제출(공단 담당자 이메일)

○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19. 9. 25. ~ 9. 30.

- 협력사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검토

○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공단 본부 제출: ~'19. 9. 30.

- 직업능력개발원 또는 고용개발원 ⇒ 공단 본부(기획조정실)

⑭ 공단방침

○ 공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우선 선정하도록 안전수준 평가 실시 예정

○ 공단은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도급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추가로 명시

1.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후 그 결과를 착수 또는 공사 시작전까지 공단에 제출
2. 공단은 위험성평가결과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붙임 구내식당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양식(예시) 1부. 끝.

[붙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내식당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명			현장 안전관리감독자	
사업장 소재지				
위험성평가 구분	□ 최초평가 □ 정시평가 □ 수시평가			
위험성평가 기간	20 . . .~ 20 . . .		위험성평가자(직위)	
위험성평가 참여자	협력사			
	공 단			

201 . . .

귀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구내식당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자: ㈜ 대표이사 ○○○ (법인인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고용개발원)장 귀하

1. 위험성평가 목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안전보건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우선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조사 시기

○ 최초평가 후 매 1년마다 정기적 실시

3. 평가 방법

1) 사전준비: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 위험성평가를 위한 관련자 회의 개최

2)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공정	유해위험요인
식재료입고 및 검수	주방 시설물에 충돌, 바닥의 미끄러짐, 계단 등에서 넘어짐,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전처리	칼·절단기·분쇄기 등 조리기구에 의한 부상, 물기로 인한 바닥에서 미끄러짐,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충돌, 작업시간
조리	칼·절단기·분쇄기 등 조리기구에 의한 부상, 주방 시설물에 충돌, 바닥의 미끄러짐, 계단 등에서 넘어짐, 뜨거운 설비(냄비 등)나 증기·기름 등에 의한 화상, 전기감전 위험, 가스 취급시 화재·폭발의 위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작업, 뜨거운 국물에 의한 화상, 작업시간
배식, 운반	주방 시설물에 충돌, 바닥의 미끄러짐, 계단 등에서 넘어짐, 전기감전 위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작업, 뜨거운 국물에 의한 화상
후처리 세척	물기로 인한 바닥에서 미끄러짐, 전기감전 위험, 가스 취급시 화재·폭발의 위험,,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조명, 작업시간, 세척제의 피부접촉

3) 위험성 추정(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표 예시 참고)

○ 사고의 중대성(강도)

강도수준	설 명
대(3)	사망, 중대한 상해,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성질병 초래위험 (절단, 큰 골절, 복합 상해, 직업성암, 급성 중독 등)
중(2)	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열상, 화상, 결림, 작은 골절, 피부염, 귀먹음, 작업관련성 근골)
소(1)	아차사고, 무상해,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질병 초래위험 (타박상, 염증, 일시적인 불편함에서 오는 질병 등)

○ 발생 가능성(빈도)

빈도수준	설 명
고(3)	일반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중(2)	발생 가능성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저(1)	거의 없음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 위험성 추정표 - 위험성 추정: 발생가능성 × 사고의 중대성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대(3)	중(2)	소(1)
고(3)	중대(9)	중대(6)	미미(3)
중(2)	중대(6)	경미(4)	미미(2)
저(1)	미미(3)	미미(2)	미미(1)

4) 위험성결정

위험성 수준	위험성의 수용	관리기준	권장 활동 및 방법
1~3 (미미)	수용	현재상태 유지	• 부가적인 위험관리 방법은 필요하지 않으나, 평가된 위험수준이 정확하도록 자주 검토되어져야 함
4 (경미)	부분 수용	개선	• 부여된 작업 환경내에서 위험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주의깊은 위험성 평가 필요 • 표지 및 작업 절차 등 관리적 위험관리 방법의 실행이 부분적으로 필요 • 작업부하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 및 조치가 필요
6~9 (중대)	불수용	즉시개선	•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고위험수준을 적어도 중간 위험정도로 줄여야 함 • 임시 위험관리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위험관리 방법은 개인보호구 또는 설비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되며 공학적인 방법이 우선되어야 함 • 가급적 위험원은 작업시작 전에 제거해야 함 • 작업시작 전부터 관리자에 의한 작업단계별 관리가 요구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 위험성평가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서식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http://kras.kosha.or.kr)을 활용

6)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4. 첨부자료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또는 자체 지침

※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

○ 위험성평가 조직: [별첨1] 참조

○ 위험성평가 결과: [별첨2] 참조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별첨3] 참조

○ 위험성평가 교육결과: [별첨4] 참조

○ 위험성평가 회의결과: [별첨5] 참조

별첨1 **위험성평가 조직도**



별첨2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결과 (예시)**

별첨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결과

작업공정	F. 후처리	평가대상공정	1. 설거지

연번	세부작업	위험요인	개선전 위험성	개선조치			개선 후 위험도			확인 (날짜)
				방법	개선 기한	담당자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1-①	인력세척	가. 세척조 주변 바닥 물기, 기름기, 이물질 방치로 통행 중 넘어짐, 충돌	4	-수시로 바닥 미끄럼 관리 실시 -안전교육실시 -미끄럼방지장화 착용 -세정실 미끄럼 방지 바닥으로 교체 (예산확보완료, 2019학년도 내 시공 예정)	즉시 (수시)	홍길동	1	2	2	'19. 8.15
1-②	식기세척기	자. 세척조 주변 바닥 물기, 기름기, 이물질 방치로 통행 중 넘어짐, 충돌	4	-수시로 바닥 미끄럼 관리 실시 -안전교육실시 -미끄럼방지장화 착용 -세정실 미끄럼 방지 바닥으로 교체 (예산확보완료, 2019학년도 내 시공 예정)	즉시 (수시)	홍길동	1	2	2	'19. 8.1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결과 증빙 사진>

개선 전	개선 후

별첨4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교육장소	(교육장)

□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방법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사진 또는 교육자료 등

□ 참석자 명단

소속	성 명	서명	소속	성 명	서명

별첨5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회의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장소	(회의실)

□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위험성평가 회의 사진 또는 회의자료 등

□ 참석자 명단

소속	성 명	서명	소속	성 명	서명

참고자료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

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제6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7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8조(유해 · 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9조(위험성 추정) ①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제10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9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3호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를 말한다)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제11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92조의11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92조의11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3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 ①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